

612년 고수 전쟁 전후 수나라의 병사 징발과 물자 동원

The Recruitment of Soldiers and Transportation of Military Supplies of the Goguryeo-Sui War in 612

최진열*

국문요약 이 논문은 612년 고수전쟁 당시 수나라의 병사 징발과 군수 물자 수송을 다룬 연구이다.

양제는 608년에 고구려 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를 시작했고 611년에 본격적인 병사들을 징발하였다. 선박 제조를 동래에서, 용거(전차) 제작을 하남·회남·강남에서 각각 맡았으며 물자 운반을 하북·하남·회남·강남에서 징발한 인부로 총당하였고 강희 이남 지역에서 수수 1만 명과 노수 3만 명, 영남 배찬수 3만 명을 각각 징발하였다. 동원된 지역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국의 인력과 물자를 징발하였다. 양제가 백성을 징발하여 노하·회원 2진으로 군량을 운반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수레와 소는 돌아오지 못했으며 사망한 사졸도 절반을 넘었다.

제1차 고구려 원정 당시 양제가 정규병의 배나 되는 2,267,600명의 궤운자, 즉 군수품 운반 인력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수나라 군대를 지휘한 우문술 등 장수들이 군량이 저장된 국경지대인 노하·회원 2진에서 고구려의 영토 안으로 침입할 때 병사들에게 100일 분량의 군량을 휴대하고 진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기사를 보면 궤운자의 군량 수송이 주로 수나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졌고 몇 년 동안 충분히 전쟁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물자 수송에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고구려, 612년 고수 전쟁, 수양제, 군사 동원, 군수물자 수송

- 차례**
1. 서론
 2. 610~611년 무기·전선 제조와 군인 징발
 3. 611~612년 군수 물자의 수송과 폐해
 4. 612년 고수전쟁 당시 물자 수송의 실상
 5. 결론

명¹의 배나 많은 병력이었다. 이는 수 양제가 남조 진나라보다 고구려가 공격하기 어려움을 자인했음을 시사하지만, 전근대시대에 유례없는 113만여 명 이상이 동원된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의 징수와 운반도 관심사였다.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 고수 전쟁, 그 가운데 수양제의 세 차례 고구려 원정(612~614)을 다룬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² 국내에서 대규모 병사를 동원한 고구려 또는 수나

1. 서론

612년 고수 전쟁 때 동원된 수나라 병력 1,133,800명이 수문제가 진(陳)나라를 정복할 때 동원한 51만 8천

1 『隋書』卷2「高祖紀」下開皇八年十月條, 31쪽, “甲子, 將伐陳, 有事於太廟. 命晉王廣·秦王俊·清河公楊素並為行軍元帥, 以伐陳. 於是晉王廣出六合, 秦王俊出襄陽, 清河公楊素出信州, 荊州刺史劉仁恩出江陵, 宜陽公王世積出蕪春, 新義公韓擒虎出廬江, 襄邑公賀若弼出吳州, 落叢公燕榮出東海, 合總管九十, 兵五十一萬八千, 皆受晉王節度. 東接滄海, 西拒巴·蜀, 旌旗舟楫, 橫亘數千里.” 이하正史와『資治通鑑』은中華書局標點校勘本에의거한다.

2 본고의 지면 한계 때문에 해당 연구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므로 연구

라의 재정이나 전쟁 물자 수송 등의 분석은 적은 편이며 고구려-수나라 전쟁에서 관련 사료를 나열한 수준이었다.³ 중국에서도 군사과학원이 40여 명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10년 동안 집필한 중국군사통사 시리즈 가운데 『수대군사사(隋代軍事史)』에서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의 병참 문제를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⁴ 이후 수양제와 당태종 시기 고구려-수당 전쟁의 병참 문제를 다룬 연구가 발표되었다.⁵ 이밖에 수대 선박 건조를 다룬 연구에서 수양제의 전함 제조를 언급하였다.⁶ 중국의 선행연구에서 각종 사료를 망라하였지만 병력과 물자 징발, 운송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필자는 612년 고수 전쟁, 즉 수양제의 제1차 고구려 원정에 징발된 병사와 무기·군량 운송에 동원된 백성들의 수와 인구, 차출 지역을 비교하면 전쟁 준비의 양상과 물자 수송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서』 「지리지」의 각 군(郡) 호수 통계를 바탕으로 징발된 백성의 징발 비율과 회남 등지에서 탁군까지의 거리를 바탕으로 계산한 운송 기한 등 자료를 통해 군수 물자 수송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이러한 방법론으로 612년 고수 전쟁을 군수물자 동원의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 610~611년 전쟁 준비 상황을 무기·전

선 제조와 군대의 징발로 나누어 검토하고 병사 징발 지역을 분석한다. 3장에서 611~612년 전쟁 전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한 조치와 백성의 동원 양상을 살펴본다. 4장에서 612년 고수 전쟁 당시 군량 수송의 실상을 다룬다. 1절에서 우문술 등이 지시한 병사들의 물자 휴대 조치를 검토한다. 2절에서 군량 수송 양상을 분석한다.

2. 610~611년 무기·전선 제조와 군인 징발

양제가 고구려와의 전쟁 준비를 위해 무기 제조와 병사 징발에 힘썼다. 610년(大業 6)에 전국의 부유한 백성들의 자산(費産)에 세금을 거두어 군마를 구매하여 부족분을 채우고 병구(兵具)와 기장(器仗)을 점검하여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구입한 말은 10만 필에 이르렀다.⁷

수나라의 본격적인 전쟁 준비는 제1차 원정 전 해인 611년(大業 7)에 시작되었다.

[이월] 임오일(611.4.14)에 고려(고구려) 토벌의 조서를 내렸다. 유주총관(幽州總管) 원홍사(元弘嗣)에게 동래군(東萊郡)의 해구(海口)로 가서 배 300척을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관리가 역(役)을 감독하였고 주야로 물속에 서서 일하고 감히 쉬지 못하여 허리 아래로 모두 구더기가 생겼으며 죽는 사람이 열명 가운데 셋 또는 네 명이였다. 여름 사월 경오일(611.6.1)에 거가는 탁군(涿郡)의 임삭궁(臨朔宮)에 이르렀는데, 양제는 자신을 따라온 9품 이상의 문무 관리에게 모두 저택을 주어 안치하였다. 예전에 전국의 병사들을 모두 징발하는데 병사들의 거주지와 탁군 사이의 거리와 상관없이 모두 탁군에 모이도록 명령하였다. 또 강회(江淮) 이남의 수수(水手) 1만 명과 노수(弩手) 3만 명, 영남 배찬수(排擲手) 3만 명을 징발하였다. 이때 사

사 정리는 임기환,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논총』 8, 신구문화사, 2014, 7~33쪽; 정동민,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軍史』 102, 2017, 259~294쪽; 정동민, 「고구려와 수 전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8, 3~6쪽 참조.

3 이정빈,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7, 139~143쪽.

4 張文才, 『隋代軍事史』(中國軍事通史 第九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123~140쪽.

5 張曉東, 『漢唐漕運與軍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10, 162~163쪽 및 168~170쪽; 曹柳麗, 『隋煬帝·唐太宗征高句麗軍事後勤建設比較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4~13쪽.

6 席龍飛, 『中國造船史』, 湖北教育出版社, 2000, 110쪽; 姜浩, 「隋唐造船業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4, 8~9쪽. 墓誌銘의 高隋 전쟁 종군자를 분석한 拜根興의 연구(拜根興, 「墓誌所見隋煬帝親征高句麗」,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8-1, 2019, 148원쪽~154오른쪽)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라는 면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7 『隋書』 卷24 「食貨志」, 687쪽, “六年, 將征高麗, 有司奏兵馬已多損耗. 詔又課天下富人, 量其費産, 出錢市武馬, 填元數. 限令取足. 復點兵具器仗, 皆令精新, 濫惡則使人便斬. 於是馬匹至十萬”.

방의 먼 곳에서 민첩하게 달려갔다.⁸

위의 인용문에서 먼저 전함 제조 문제를 살펴보자. 동래군은 산동반도의 동부 해안 지역에 위치하였다. 수양제가 동도(東都) 낙양을 건설할 때 강남 제주(諸州)에서 큰 나무를 베어서 운반하라는 명령⁹을 보면 낙양 주변의 황하 중하류 지역에도 목재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사서에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산동 반도에서 배를 만들 목재가 부족하여 동도 건설처럼 강남에서 선박 제조용 목재를 동래군으로 운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위의 인용문에서 선박을 제조하는데 동원된 인력의 수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당나라의 예에서 300척을 만드는데 동원된 인력을 추산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당 태종 시기인 648년(貞觀 22)의 사례에서 대선 1척 제조 비용인 2,236필이 약 1,491명의 20일 요역 또는 596명의 50일 조조역(租調役=조용조) 면제 액수에 해당한다.¹⁰ 수양제 시기에도 배 1척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노동력이 동원하고 이를 견(絹)으로 환산한 가격도 같다고 가정하고 이를 611년 300척 건조에 대입하면 447,300명을 20일 또는 178,880명을 50일 동원해야 했다. 609년(大業 5) 당시 산동반도에 위치 동래군의 호수는 90,351호에 불과했다.¹¹ 동래군과 함께 청주(靑州)로 편제된 북해군(147,845戶),¹² 제군(152,323戶),¹³ 고밀군(71,920戶)¹⁴의

호수 합계가 462,439호였다. 산술적으로 이 4군의 1호마다 성인남성 1명씩 차출하여 20일 동안 요역에 동원해야 300척을 만들 수 있었다. 4군의 모든 호에서 1정(丁)을 징발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4군 이외의 지역에서도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성인 남성을 징발해야 한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제북군(105,660戶)¹⁵ 동군(121,905戶),¹⁶ 동평군(105,660戶),¹⁷ 양군(155,477戶),¹⁸ 제음군(140,948戶),¹⁹ 팽성군(130,232戶),²⁰ 노군(124,019戶),²¹ 낭야군(63,423戶),²² 동해군(27,858戶)²³의 총 호수가 975,182호이므로 이 9군에서 인력을 징발하여 동래군이나 주변 3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이어서 강희 이남의 수수 1만 명과 노수 3만 명, 영남 배찬수 3만 명을 징발한 대목이 주목된다. 배의 선원을 뜻하는 수수(水手)가 식량을 운반하거나 내호아(來護兒)가 지휘한 수군에 배정되어 군사와 군량을 운반하는 배의 항해를 맡았을 것이다. 수문제는 598년(開皇 18) 오(吳)·월(越)로 표기되는 장강 이남 지역에서 큰 배를 만들지 못하도록 명령하였고 강남의 여러 주에 있는 3장(대척으로 3.11미터, 소척으로 2.46미터) 이상의 배를 관이 몰수하였다.²⁴ 이

8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大業七年條, 5653쪽, “[二月]壬午, 下詔討高麗. 敕幽州總管元弘嗣往東萊海口造船三百艘, 官吏督役, 晝夜立水中略不敢息, 自腰以下皆生蛆, 死者什三四. 夏, 四月, 庚午, 車駕至涿郡之臨朔宮, 文武從官九品以上, 並令給宅安置. 先是, 詔總徵天下兵, 無問遠近, 俱會於涿. 又發江淮以南水手一萬人, 弩手三萬人, 嶺南排擲手三萬人, 於是四遠奔赴如流”.

9 『隋書』 卷24 「食貨志」, 686쪽, “又命黃門侍郎王弘·上儀同於士澄, 往江南諸州採大木, 引至東都. 所經州縣, 遞送往返, 首尾相屬, 不絕者千里. 而東都役使促迫, 僵仆而斃者, 十四五焉”.

10 최진열, 「唐太宗 시기 高唐 전쟁과 선박 제조: 제조 인력과 건조 비용의 재정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軍史』 127, 2023, 12~13쪽.

11 『隋書』 卷30 「地理志」中 靑州·東萊郡條, 861쪽, “統縣九, 戶九萬三百五十一”.

12 『隋書』 卷30 「地理志」中 靑州·北海郡條, 860쪽, “統縣十, 戶十四萬七千八百四十五”.

13 『隋書』 卷30 「地理志」中 靑州·齊郡條, 861쪽, “統縣十, 戶十五萬二千三百二十三”.

14 『隋書』 卷30 「地理志」中 靑州·高密郡條, 862쪽, “統縣七, 戶七萬一千九百二十”.

15 『隋書』 卷30 「地理志」中 兗州·濟北郡條, 844쪽, “統縣九, 戶十萬五千六百六十”.

16 『隋書』 卷30 「地理志」中 兗州·東郡條, 843쪽, “統縣九, 戶十二萬一千九百五”.

17 『隋書』 卷30 「地理志」中 兗州·東郡條, 844쪽, “統縣六, 戶八萬六千九十”.

18 『隋書』 卷30 「地理志」中 兗州·梁郡條, 836쪽, “統縣十三, 戶十五萬五千四百七十七”.

19 『隋書』 卷30 「地理志」中 豫州·濟陰郡, 837쪽, “統縣九, 戶十四萬九百四十八”.

20 『隋書』 卷31 「地理志」下 徐州·彭城郡條, 870쪽, “統縣十一, 戶一十三萬二百三十二”.

21 『隋書』 卷31 「地理志」下 徐州·魯郡條, 870쪽, “統縣十, 戶十二萬四千一百一十九”.

22 『隋書』 卷31 「地理志」下 徐州·琅邪郡條, 871쪽, “統縣七, 戶六萬三千四百二十三”.

23 『隋書』 卷31 「地理志」下 徐州·東海郡條, 870쪽, “統縣五, 戶二萬七千八百五十八”.

24 『隋書』 卷2 「高祖紀」下 開皇十八年正月辛丑條, 43쪽, “十八年春正月辛

는 수나라가 558년(開皇 8) 진나라를 멸했으나 590년(開皇 10),²⁵ 597년(開皇 17) 二月²⁶과 七月,²⁷ 600년(開皇 20),²⁸ 602년(仁壽 2)²⁹ 등 진나라의 옛 영토인 장강 이남 지역에서 토착호족들이 자주 일으킨 반란³⁰과 관련 있을 것이다. 장강 유역에 강과 호수, 늪이 많았기 때문에 반란군이 배를 이용하여 전쟁을 벌였을 것이므로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대형 선박의 제조를 금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3장이상의 배를 몰수하여 반란군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대형 선박을 관청에서 몰수했으므로 수수는 관청 소속이거나 관청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었을 것이다. 양제는 이들을 고수 전쟁에 징발한 것이다.

노수(弩手)는 쇠뇌를 쏘는 사수이다. 양제가 제1차 고구려 원정 당시 113만 3,800명을 동원했는데 3만의 노수는 전체 병력의 2.6%에 해당한다. 당나라 초기 명장인 이정(李靖)이 쓴 『위공병법』에 당나라 초기 출정한 군사들의 병종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장이 2만 명을 거느리고 출정할 때 7군으로 나뉘는데 중군(中軍)의 병사 2,800명 가운데 노수는 400명(14.3%), 좌우우후(左右虞候)가 지휘하는 병사 1,900명 가운데 노수가 300명(15.8%), 좌우상(左右廂) 각 2군의 병사 1,850명 가운데 노수는 250명(13.5%)이었다. 전체 2만 가운데 병사가 14,000명³¹ 가운

데 노수는 모두 2,000명으로 전체 병력의 14.3%를 차지하였다. 만약 이 군대의 편성이 수나라 때에도 같았다면 노수가 양제의 1차 고구려 원정에 동원된 113만 3,800명의 14.3%를 차지했고, 노수는 약 162,133명이다. 회수·장강 이남 지역 백성들이 쇠뇌를 잘 쏘았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이 지역의 노수 3만 명은 다른 지역에서 징발한 노수의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징집되었을 것이다. 수문제는 595년(개황 15) 관중(關中) 연변(緣邊)을 제외한 전국의 무기를 회수하고 병기의 사조(私造)를 금지하였다.³² 따라서 회수·장강 이남에서 쇠뇌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이거나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쇠뇌 소지 허가를 받은 소수의 사람이었을 것이다.³³

마지막으로 배찬수(排擯手)의 ‘찬(擯)’은 『자치통감』 호삼성주에 따르면 소삭(小稍) 즉 작은 창이다.³⁴ 선행연구에서 배찬수는 창(矛)의 일종인 모(矛)로 무장된 병졸로 보거나³⁵ 방패와 소삭으로 무장한 병사라고 해석하거나³⁶ 강회 이남의 수수 1만 명과 노수 3만 명, 영남 배찬수 3만 명을 수군으로 주장하기도 한다.³⁷ 배찬수는 ‘찬’은 『신당서』 「병지」에 ‘攢(擯)’으로 표기되었고,³⁸ 『구당서』와 『신당서』에 배찬병(排擯兵) 또는 배삭병(排稍兵)으로 표기되었다. 수

丑, 詔曰:「吳·越之人, 往承弊俗, 所在之處, 私造大船, 因相聚結, 致有侵害, 其江南諸州, 人間有船長三丈已上, 悉括入官」.

25 『隋書』卷2「高祖紀」下 開皇十年十一月條, 35쪽, “是月, 婺州人汪文進·會稽人高智慧·蘇州人沈玄愔皆舉兵反, 自稱天子, 署置百官. 樂安蔡道人·蔣山李稜·饒州吳代華·永嘉沈孝激·泉州王國慶·餘杭楊寶英·交趾李春等皆自稱大都督, 攻陷州縣. 詔上柱國·內史令·越國公楊素討平之”.

26 『隋書』卷2「高祖紀」下 開皇十七年二月庚子條, 41쪽, “庚子, 上柱國王世積討桂州賊李光仕, 平之”.

27 『隋書』卷2「高祖紀」下 開皇十七年七月丁丑條, 42쪽, “秋七月丁丑, 桂州人李代賢反, 遣右武侯大將軍虞慶則討平之”.

28 『隋書』卷2「高祖紀」下 開皇二十年三月辛卯條, 45쪽, “三月辛卯, 熙州人李英林反, 遣行軍總管張衡討平之”.

29 『隋書』卷2「高祖紀」下 仁壽二年八月己巳條, 48쪽, “十二月癸巳, 上柱國·益州總管蜀王秀廢為庶人. 交州人李佛子舉兵反, 遣行軍總管劉方討平之”.

30 韓昇, 「南方復起與隋文帝江南政策的轉變」, 『廈門大學學報·哲社版』 1998-2, 1998, 28~34쪽; 張文才, 『隋代軍事史』(中國軍事通史 第九卷), 58~60쪽.

31 『通典』卷148「兵典」1 立軍條, 3792~3793쪽, “諸大將出征, 且約授兵二萬人, 即分為七軍. 如或, 臨時更定. 大率十分之中, 以三分為奇兵. 中

軍四千人, 內取戰兵二千八百人, 五十人為一隊, 計五十六隊. 戰兵內, 弩手四百人, 弓手四百人, 馬軍千人, 跳盪五百人, 奇兵五百人. 左右虞候各一軍, 每軍各二千八百人, 內各取戰兵千九百人, 共計七十六隊. 戰兵內, 每軍弩手三百人, 弓手三百人, 馬軍五百人, 跳盪四百人, 奇兵四百人. 左右廂各二軍, 軍各二千六百人, 各取戰兵千八百五十人. 戰兵內, 每軍弩手二百五十人, 弓手三百人, 馬軍五百人, 跳盪四百人, 奇兵四百人. 馬步通計, 總當萬四千, 共二百八十隊當戰, 餘六千人守輜重”.

32 『隋書』卷2「高祖紀」下 開皇十五年二月丙辰條, 39쪽, “二月丙辰, 收天下兵器; 敢有私造者, 坐之. 關中緣邊, 不在其例”.

33 淺見直一郎은 弩手 등이 唐代的 折衝府에 해당하는 隋의 鷹揚府에 속하는 府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長江과 淮水 이남 지역에 鷹揚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이 특수한 기능을 지닌 병사였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淺見直一郎, 「煬帝의 第一次高句麗遠征軍: その規模と兵種」, 『東洋史研究』 44-1, 1985, 32~33쪽.

34 『資治通鑑』卷181「隋紀」5 煬帝大業七年四月庚午條胡註, 5653쪽, “小稍也”.

35 淺見直一郎, 「煬帝의 第一次高句麗遠征軍: その規模と兵種」, 32~33쪽.

36 王仲榮, 『隋唐五代史』, 北京: 中華書局, 2007, 65쪽.

37 정동민, 「高句麗와 隋전쟁 연구」, 60쪽.

38 『新唐書』卷50「兵志」, 1325쪽.

말·당초 군웅의 한 사람인 왕세충(王世充)과 진왕(秦王) 세민(世民, 훗날의 당태종)이 싸울 때 왕세충의 군사 가운데 배찬병³⁹ 또는 배삭병⁴⁰이 존재하였다. 배삭(排稍)을 “言執排執稍者也”⁴¹라고 설명한 『자치통감』의 호삼성주에 따르면, ‘배(排)’는 순패(盾牌), 즉 방패라는 뜻이므로 배삭병은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사이다. 즉 배찬수(排攢手)는 배찬수(排攢手), 배찬병(排攢兵), 배삭병(排稍兵)으로도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당서』 「병지」에 따르면 절충부의 위사(衛士)는 무예에 따라 월기(越騎), 보병(步兵), 무기(武騎), 배찬수(排攢手), 보사(步射)의 다섯 가지로 나뉘었다.⁴² 당나라의 절충부(折衝府)가 수나라의 응양부(鷹揚府, 표기부(驃騎府)와 거기부(車騎府)를 개칭)의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⁴³ 당대의 다섯 병종이 수나라의 응양부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즉 영남 배찬수 3만 명은 수나라 응양부의 다섯 병종 가운데 배찬수, 즉 짧은 창 또는 긴 창과 방패로 무장한 영남 출신의 병사로 해석된다.⁴⁴ 정리하면, 배찬수는 창

으로 무장한 보병이며 당대 절충부의 사례에 비춰보면, 응양부에 배속된 병종의 하나였을 것이며 특별한 부대 또는 병사의 명칭이 아니었다. 회남과 강남의 노수와 더불어 영남의 배찬수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고구려를 전력으로 공격하기 위해 수나라의 가장 남쪽 지역에서조차 군사들을 징집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서술이었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강회(江淮 이남)’와 영남은 수나라의 행정구역이 아니었고 당태종 시기에 설정한 10도의 감찰구역인 강남도, 회남도, 영남도였다. ‘강회 이남’을 장강과 회남 이남 지역에 위치한 강남도와 회남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 『수서』 「지리지」에 당시 회수 이남부터 당나라 영남도에 해당하는 현재의 광둥성 일대가 양주로 편제되었다.⁴⁵ 609년(大業 5) 파악된 양주의 944,054호⁴⁶에서 수수 1만 명과 노수 3만 명, 영남 배찬수 3만 명을 합한 7만 명의 군인을 충분히 징발할 수 있었다.

인용문에 기록되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도 차출되었다. 613년(大業 9)에 여항(餘抗) 백성 유원진(劉元進)이 군대를 일으켜 양현감의 반란에 호응했는데 이때 삼오 지역의 병사들도 유원진의 대오에 합류하였다. 삼오의 병사들은 613년에 다시 고구려 공격을 위해 징발되었는데 이미 전 해의 제1차 고구려 원정에 삼오 백성들이 징집되었다가 태반, 즉 2/3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걱정하여 대부분 망명하였다.⁴⁷ 여기에서 삼오 지역의 병사들도 양제의 제1차 고구려 침략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치통감』의 호삼성주에 따르면 삼오(三吳)는 오군(吳郡)·오흥(吳興)·의흥(義興), 오군·오흥·

39 『新唐書』卷85「王世充傳」, 3695쪽, “四年二月, 青城宮守將以宮降, 王進保之. 世充引兵出方諸門, 臨穀水以戰, 王陣北邛, 屈突通步士五千踰水擊之. 兵接, 王以騎決戰, 世充排攢兵殊死鬪, 自辰及午乃潰, 俘斬八千人”.

40 『舊唐書』卷68「尉遲敬德傳」, 2496쪽, “是日, 因從獵於榆窠, 遇王世充領步騎數萬來戰. 世充驍將單雄信領騎直趨太宗, 敬德躍馬大呼, 橫刺雄信墜馬. 賊徒稍卻, 敬德翼太宗以出賊圍, 更率騎兵與世充交戰, 數合, 其眾大潰, 擒偽將陳智略, 獲排稍兵六千人.”; 『新唐書』卷89「尉遲敬德傳」, 3752쪽, “是日獵榆窠, 會世充自將兵數萬來戰, 單雄信者, 賊驍將也, 騎直趨王, 敬德躍馬大呼橫刺, 雄信墜, 乃翼王出, 率兵還戰, 大敗之, 禽其將陳智略, 獲排稍兵六千”.

41 『資治通鑑』卷188「唐紀」4 高祖武德三年九月辛巳條胡註, 5891쪽, “排稍, 言執排執稍者也”.

42 『新唐書』卷50「兵志」, 1325쪽, “凡民年二十為兵, 六十而免. 其能騎而射者為越騎, 其餘為步兵·武騎·排攢手·步射”.

43 隋代와 唐初 府兵 명칭의 변화는 隋代에 驃騎府와 車騎府에서 鷹揚府로 바뀌었고, 唐初에 다시 驃騎府와 車騎府로 고쳤다가 양자가 統軍으로 바뀌었다가 折衝府로 개칭되었다(『新唐書』卷50「兵志」, 1324~1325쪽).

44 馮盎은 高州 良德縣 사람으로 누대에 걸쳐 本部大首領이었고(『舊唐書』卷109「馮盎傳」, 3287쪽, “馮盎, 高州良德人也. 累代為本部大首領.”) 3대에 걸쳐 本郡太守에 임명되었다(『新唐書』卷110「諸夷蕃將·馮盎傳」, 4112쪽, “馮盎字明達, 高州良德人, 本北燕馮弘裔孫. 弘不能以國下魏, 亡奔高麗, 遣子業以三百人浮海歸晉, 弘已滅, 業留番禺, 至孫融, 事梁為羅州刺史. 子寶, 聘越大姓洗氏女為妻, 遂為首領, 授本郡太守, 至盎三世矣”). 嶺南 지역의 토착 세력인 馮盎이 煬帝의 高句麗 정벌에 참여하였고 이후 左武衛大將軍에 임명되었다(『新唐書』卷110「諸夷蕃將·馮盎傳」, 4112쪽, “從煬帝伐遼東, 遷左武衛大將軍. 隋亡, 奔還嶺表, 嘯聚酋領, 有眾五萬”). 馮盎 혼자만 高句麗 원정에 종군했는지, 그의 부하, 部曲 등과 同鄉

사람들도 따라갔는지 史書에 기록되지 않았다. 정황을 보면 馮盎의 가족이나 부하, 奴婢·部曲, 고향 사람들도 종군했을 가능성이 크다.

45 『隋書』卷31「地理志」下 揚州·南海郡條細注, 880쪽, “舊置廣州, 梁·陳並置都督府. 平陳, 置總管府. 仁壽元年置番州, 大業初府廢”.

46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76~77쪽, 甲表22 隋各州郡戶數及每戶平均戶數.

47 『資治通鑑』卷182「隋紀」6 煬帝大業九年七月癸未條, 5679쪽, “秋七月癸未, 餘抗民劉元進起兵以應玄感. 元進身長尺餘, 臂垂過膝, 自以相表非常, 陰有異志. 會帝再發三吳兵征高麗, 三吳兵皆相謂曰: ‘往歲天下全盛, 吾輩父兄征高麗者猶太半不返; 今已罷弊, 復為此行, 吾屬無遺類矣!’ 由是多亡命. 郡縣捕之急, 聞元進舉兵, 亡命者雲集, 旬月間, 眾至數萬”.

회계(會稽), 오군·오흥·단양(丹陽)⁴⁸ 등 가리키는 지역이 작자들마다 달리 설명하는데, 대체로 장강 하류 남쪽 지역이며 좁은 의미의 '강남'에 해당한다. 『수서』 「유원진전」에서 오회(吳會)라고 표기하였다.⁴⁹ 오회는 오군과 회계군을 합하여 호칭하는 단어이며, 현재의 강소성 장강 하류 이남 지역과 항주(杭州) 등 절강성의 북쪽 지역을 가리킨다. 따라서 양제는 장강 하류의 강남 지역에서도 병사들을 징발했음을 알 수 있다. 수대 단양군은 24,125호,⁵⁰ 선성군은 19,979호,⁵¹ 비릉군은 17,599호,⁵² 오군이 18,377호,⁵³ 회계군이 20,271호,⁵⁴ 여항군이 15,380호⁵⁵였다. 이 6군의 호수가 115,731호였다. 화북 지역보다 인구가 많지 않았지만 수나라는 이 지역에서도 병사들을 징발하였다.

요컨대 수 양제는 각각 형주(荊州)와 양주(梁州)로 편제된 장강 중류와 상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사실상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을 병사로 징발하였다. 이는 육군이 주로 관내·하동·하남 3도에서, 수군이 강남·회남·산남·영남 4도에서 징발했던 645년 고당 전쟁⁵⁶과 비교하면 병사의 징발 범위가 더 넓었다.

3. 611~612년 군수 물자의 수송과 피해

대업 7년(611) 오월부터 군량과 무기 등 군수 물자의 이동과 관련된 조치가 취해졌다. 아래는 『자치통감』 대업칠년조의 해당 기사이다.

오월에 하남·회남·강남에 용거(戎車) 5만 승을 만들어 고양(高陽)으로 운송하는데 의·갑·만막(衣甲幔幕)을 실어 날랐으며 병사에게 스스로 끌라고 명령하였으며 하남과 하북 백성을 징발하여 군수품을 운반하도록 하였다. 가을 칠월에 강·회 이남의 민부(民夫)와 배를 징발하여 여양(黎陽)과 낙구(洛口)에 있는 여러 창고의 미(米)를 탁군까지 운반하도록 명령했는데 배의 고물과 이물이 차례로 1천여 리 이어졌다. 또 무기와 갑옷, 공격용 기구를 싣고 길에서 오가는 사람이 늘 수십만 명이었으며, 길에 많은 사람이 붐벼서 밤낮으로 수송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죽은 자가 많았는데 고약한 냄새가 나고 더러움이 길에 가득 찼다. 이에 천하가 시끄럽게 떠들어 대며 술렁거렸다.⁵⁷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양제는 오월에 하남·회남·강남 지역에서 용거 5만 승을 만들어 고양현으로 운송하도록 명령하였다. 수당시대에 동도 낙양과 주변 지역에 목재가 부족하여⁵⁸ 하남 지역에서 용거, 즉 전차를 대량으로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당대 소주(蘇州)·요주(饒州)·호주(湖州)·월주(越州)·양주(揚州)·담주(潭州)·홍주(洪州) 등 강남의 주에서 건축과 선박 제조를 위한 목재

48 『資治通鑑』 卷94 「晉紀」16 成帝咸和三年五月條細注, 2956~2957쪽, “漢置吳郡; 吳分吳郡置吳興郡; 晉又分吳興·丹楊置義興郡, 是為三吳. 酈道元曰: 世謂吳郡·吳興·會稽為三吳. 杜佑曰: 晉·宋之間, 以吳郡·吳興·丹楊為三吳”.

49 『隋書』 卷70 「劉元進傳」, 1623쪽, “煬帝興遼東之役, 百姓騷動, 元進自以相表非常, 陰有異志, 遂聚眾, 合亡命. 會帝復征遼東, 徵兵吳·會, 士卒皆相謂曰: ‘去年吾輩父兄從帝征者, 當全盛之時, 猶死亡太半, 骸骨不歸; 今天下已罷敝, 是行也, 吾屬其無遺類矣.’ 於是多有亡散, 郡縣捕之急”.

50 『隋書』 卷31 「地理志」下 揚州·丹陽郡條, 876쪽, “統縣三, 戶二萬四千一百二十五”.

51 『隋書』 卷31 「地理志」下 揚州·宣城郡條, 877쪽, “統縣六, 戶一萬九千九百七十九”.

52 『隋書』 卷31 「地理志」下 揚州·毗陵郡條, 877쪽, “統縣四, 戶一萬七千五百九十九”.

53 『隋書』 卷31 「地理志」下 揚州·吳郡條, 877쪽, “統縣五, 戶一萬八千三百七十七”.

54 『隋書』 卷31 「地理志」下 揚州·會稽郡條, 878쪽, “統縣四, 戶二萬二百七十一”.

55 『隋書』 卷31 「地理志」下 揚州·餘杭郡條, 878쪽, “統縣六, 戶一萬五千三百八十”.

56 최진열, 「645년 고당 전쟁과 唐兵의 편제」, 『軍史』 132, 2024, 249~284쪽.

57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大業七年條, 5653쪽, “五月, 敕河南·淮南·江南造戎車五萬乘送高陽, 供載衣甲幔幕, 令兵士自挽之, 發河南·北民夫以供車須. 秋, 七月, 發江·淮以南民夫及船運黎陽及洛口諸倉米至涿郡, 舳舻相次千餘里, 載兵甲及攻之具, 往還道常數十萬人, 填咽於道, 晝夜不絕, 死者相枕, 臭穢盈路, 天下騷動”.

58 史念海, 「黃河中流森林的變遷及其經驗教訓」, 『河山集』 3, 北京: 人民出版社, 1988, 141쪽; 吳家洲, 「唐代洛陽地區森林變遷研究」, 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8.6, 29~142쪽; 吳家洲, 「唐代洛陽地區新營建宮殿建築與森林變遷」,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8, 11월쪽~170쪽.

가 풍부하였다.⁵⁹ 따라서 하남이 수레의 재료인 나무가 풍부하지 않았지만 탁군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레 생산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회남과 강남이 목재가 풍부했기 때문에 수레 제조 지역에 포함되었으며 후자의 지역에서 용거의 대부분을 만들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물자 운송에 징발된 지역을 살펴보면 하남과 하북의 백성이 군수품의 운송에 동원되었고 강·회 이남의 민부와 배도 징발되었다. 하남과 하북은 당시 감찰구역인 각각 예주(豫州)·연주(兗州)·청주(靑州)·서주(徐州), 기주(冀州)에 속했으며, 전자에 해당하는 지역의 호수 합계가 3,244,462호와 2,672,381호였고 강·회 이남에 해당하는 양주(揚州)에 944,054호가 있었다.⁶⁰ 해당 지역의 호수 합계가 6,860,897호였으므로 산술적으로 1,133,800명의 배나 되는 군량 수송 인원을 징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1호에 성인남성 1명이라고 계산하면 징발할 수 있는 인력은 해당 지역 성인남성의 33%에 달한다. 만약 1호에 성인남성 2명이 있었다고 계산하면 16.5%로 줄어들지만 적은 비율이 아니었다. 당 태종이 하북·하남 2도의 백성들에게 군량 수송을 지시했던 644~645년 상황⁶¹과 비교하면, 군수 물자 운송에 동원된 지역이 훨씬 넓었다.

612년 제1차 고구려 침략 당시 췌운자 등 병참을 운반하는 인력이 전투병의 배에 해당한다는 구절이 주목된다. 『수서』, 특히 「양제기」가 양제의 실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양제의 지나친 인력 동원을 비난할 의도로 과장되었거나 왜곡하여 기술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계필담』에 따르면 왕복 31일 일정의 거리까지 군량을 수송할 때 군인 1명의 2배에 해당하는 짐꾼 3명이 필요하였다. 또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치중은

그 군대의 세 배가 되었다.⁶² 탁군에서 요수까지의 거리가 약 1,690리이므로 약 34일(사람이 짐을 짊어지거나 나귀로 옮길 경우) 또는 약 57일(수레를 이용할 경우)이 걸렸다.⁶³ 따라서 탁군에서 고구려와의 국경선까지 군량을 수송하는데 사람이 가축이나 수레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전투병 1명에 췌운자 3명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수양제는 1/3을 줄여 전투병의 배인 2,267,600명을 동원하였다. 이는 외형상 백성들의 운송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귀와 수레를 이용하여 물자를 운반했기 때문에 췌운자, 즉 운송 인력을 줄일 수 있었다.⁶⁴

각종 군수 물자 운반에 동원된 사람들은 강·회 이남 지역에서 통제거(通濟渠)를 통해 황하 연안으로 북상한 후에 여양창(黎陽倉)과 낙구창(洛口倉)의 미(米)를 영제거(永濟渠)를 통해 탁군까지 운반하였다. 당 전기 진자양(陳子昂)의 「상군국기요사(上軍國機要事)」에 따르면, 당대 산남도(山南道)와 회남도(會南道)에서 유주(幽州)까지 4천 리이며 병사들이 하루에 100리 간다고 계산하면(兵期) 40일이 걸렸다.⁶⁵ 이는 군사들의 행군 속도이고 물자를 수송할 경우 달랐다. 당나라 때 정부는 말은 하루에 70리, 도보와 나귀를 타고 가면 50리, 수레는 30리 이동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 배에 짐을 싣고 황하를 거슬러 올라가면 규정상 하루에 30리, 장강은 40리, 나머지 강은 45리 항해해야 했고 빈 배는 각각 40리(황하), 50리(장강), 60리(나머지 강) 가야 했다. 하루로 짐을 싣고 내려갈 때 각각 150리(황하), 100리(장강), 70리(나머지 강)를 이동해야 했다.⁶⁶ 회남 지역 민부(백성)가 도보나 가축에 짐을

62 『夢溪筆談』 卷11 「官政」 1, 114~115쪽.

63 최진열,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 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軍史』 124, 2022, 150~155쪽.

64 위의 글, 153~154쪽.

65 『全唐文』(董誥等編, 北京: 中華書局, 1983) 卷211 「陳子昂」 3 上軍國機要事條, 2135쪽(卷211의6b)~2136쪽(卷211의7a), “今國家第一要者, 在稍寬兵期, 山南·淮南去幽州四千里, 所司使十月上旬到, 計日行百里, 四十日方到, 即今水雨如此, 又徵符到彼未久, 當日便發, 猶不及期, 況未便發, 且日行不可百里. 若違限者死, 國有常刑, 到不及期, 懼罪逃散為賊, 此更生一患. 縱倍程趁期, 亦恐不及, 若違不誅, 則軍不可統; 若違必誅, 則全眾皆怨. 況兵疲不堪用, 吳廣·陳勝為盜由此, 切切切急!”

66 『唐六典』 卷3 尚書戶部·度支郎中條, 80쪽, “凡陸行之程, 馬日七十里, 步

59 董咸明, 「唐代的自然生產力與經濟中心南移—試論森林對唐代農業·手工業生產的影響—」, 『雲南社會科學』 1985-12, 1985, 105~106쪽; 姜浩, 「隋唐造船業研究」, 8~15쪽.

60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74~77쪽, 甲表22 隋各州郡戶數及每戶平均戶數.

61 최진열,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東洋史學研究』 167, 2024, 132~145쪽.

신고 운반하면 80일, 수레로 운반하면 약 134일, 배로 운송하면 약 89일(거슬러 갈 경우) 또는 58일(내려갈 경우) 걸렸다. 이는 회남 기준이므로 장강 이남 지역에서 징발된 백성이 탁군까지 가려면 더 많은 날짜가 걸렸을 것이다. 당시 백성들이 요역으로 징발되었을 때 자신이 의식주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당나라의 도량형 기준으로 최소 58일, 최대 134일 동안 식량도 가지고 가야 했다. 이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게다가 물자의 운송을 명령했을 때가 음력 오월이었다. 이때부터 회남 백성의 경우 왕복 116~268일, 즉 4~9달이 걸리므로 물자 수송에 동원되면 611년(大業7) 한해 농사를 포기해야 했다. 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다른 성인 남성들이 있는 경우나 왕복 거리가 짧은 하북이나 하남 지역의 백성들은 사정이 나올 수 있으나 농번기에 동원되는 상황은 같았다. 따라서 하남·하북·강회 지역 백성의 징발이 징발 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도 이 지역 호수의 최소 16.5%, 최대 33%의 호가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해 조세 징수 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자치통감』에도 기록되었다.

양제가 작년부터 고구려를 토벌하기로 모의하여 산둥에 부(府)를 설치하라는 조서를 내리고 말을 길러 군에 공급하는 역을 맡도록 명령하였다. 또 ① 민부(民夫)를 징발하여 미(米)를 운반하여 여하(瀘河)·회원(懷遠) 2진에 저장하도록 하였으나, 그곳으로 간 수레와 소는 모두 돌아오지 못하였고 사망한 사졸이 절반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② 경가(耕稼)의 때를 놓쳐 전주(田疇)는 대부분 거칠어졌다. 게다가 기근이 겹쳐서 곡가(穀價)가 급등하였다. 특히 동북변이 더욱 심하여 1말(斗)의 미(米) 가격은 수백 전에 해당하였다. ③ 운반하는 미가 조악하면 백성에게 곡물을 사서 배상하도록 하였다. 또 녹차부(鹿車夫) 60여 만을 징발하여 2명이 함께 미(米) 3석을 운반하도

及驢五十里，車三十里。水行之程：舟之重者，溯河日三十里，江四十里，餘水四十五里，空舟溯河四十里，江五十里，餘水六十里。沿流之舟則輕重同制，河日一百五十里，江一百里，餘水七十里”。

록 하였으나 길이 험하고 멀어서 죽히 후량(餽糧)을 충당할 수 없었으며 진(鎭)에 도착하면, 운반할 식량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모두 죄를 두려워하여 도망갔다. 게다가 관리가 탐욕스럽고 잔인하여 이 기회를 노려 강제적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므로 백성들은 곤궁하고 재력(財力)이 모두 없어졌으니, 편안히 지낸다고 해도 굶주림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이 닥쳐올 때 약탈하면 오히려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으니 ④ 이 때 처음으로 서로 모여 군도(群盜)가 되었다.⁶⁷

인용문의 밑줄친 ② 부분의 발갈고 씨 뿌릴 때를 놓쳐 농사를 망쳤고 흉년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했던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611년(大業7) 오월 하남·하북·강회 지역 백성들을 물자 수송을 위해 징발한 결과였다.

먼저 민부를 징발하여 노하·회원 2진까지 미를 운반하도록 한 ① 부분의 조치가 주목된다. 호삼성주에 따르면 수나라는 영주(營州) 경내의 여라 고성(汝羅故城)에 요서군(遼西郡)을 설치하고 요서(遼西)·여하(瀘河)·회원(懷遠) 3현을 관할하게 하였다.⁶⁸ 앞에서 이 해 이월부터 여양창과 낙구창, 또는 각지의 식량을 탁군으로 옮기게 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민부는 탁군까지만 아니라 탁군에서 노하·회원 2진까지도 곡물을 운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⁶⁹ 뒤에 나오는 구절에 군량 수송에 동원된 인부와 운송수단인 수레와 소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67 『資治通鑑』卷181「隋紀」5 煬帝大業七年十二月己未條，5655쪽，“又發民夫運米，積於瀘河·懷遠二鎮，車牛往者皆不返，士卒死亡過半，耕稼失時，田疇多荒。加之饑饉，穀價踊貴，東北邊尤甚，斗米直數百錢。所運米或粗惡，令民糶而償之。又發鹿車夫六十餘萬，二人共推米三石，道途險遠，不足充餽糧，至鎮，無可輸，皆懼罪亡命。重以官吏貪殘，因緣侵漁，百姓困窮，財力俱竭，安居則不勝餒，死期交急，粟粒則得延生，於是始相聚為群盜”。

68 『資治通鑑』卷181「隋紀」5 煬帝大業七年十二月條胡註，5655쪽，“新唐志曰：隋於營州之境，汝羅故城置遼西郡，領遼西·瀘河·懷遠三縣”。

69 당시 고구려 침략 기지인 涿郡을 포함하여 그 서쪽에 漁陽·安樂·北平·遼西 5군의 호구는 각각 84,059호, 3,925호, 2,269호, 7,590호, 751호였다(『隋書』卷30「地理志」中 冀州條, 857~859쪽). 이를 합하면 97,843호인데, 이 지역에서 징발한 백성만으로 涿郡부터 瀘河·懷遠 2鎮까지 약 113만 명의 군량을 운송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하북 등 전국에서 징발된 백성들이 涿郡까지가 아니라 고구려와의 국경 지역까지 군량을 수송했을 것이다.

속출했으며 기근이 들어 곡물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 동북변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나라의 영토에서 동북쪽 변경이 탁군 주변에서 고구려와의 국경까지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고구려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백성들이 먼저 군량 운반에 동원되었고, 다음으로 이 지역과 가까운 하북 지방의 백성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와 접경 지역으로 식량을 운반하는 어려움은 녹차부 60여 만 명이 2인 1조를 이루어 함께 미 3석을 운반한 예에서도 발견된다. 녹차를 손으로 끄는 작은 수레(小車)로 보는 견해가 있다.⁷⁰ 이 주장이 옳다면 소나 말과 같은 가축 대신 두 명이 수레를 끌며 물자를 수송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노하·회원 2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운송해야 할 식량을 도중에 소비하여 남아 있는 식량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몽계필담』에 따르면 왕복 31일 걸리는 곳까지 군량을 수송하려면 군인 1명의 3배, 즉 짐꾼 3명이 필요하였다. 또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치중은 그 군대의 세 배가 되며, 군인 7만 명을 먹이기 위해 30만 명분의 군량을 운송해야 했다.⁷¹ 탁군에서 요수까지의 거리가 약 1,690리이므로 사람이 짐을 짊어지거나 나귀로 옮기면 약 34일이 걸리고 수레를 이용하면 약 57일이 걸렸다. 따라서 『몽계필담』의 계산처럼 편도로 약

34일 또는 57일 걸리는 곳까지 식량을 수송하면 운반 도중 모두 먹어치우게 된다.⁷² 따라서 녹차를 끄는 인부들이 도중에 식량을 소모하여 군량을 운반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도망쳤다는 ② 부분의 기록이 과장이 아니다.

운반한 곡물이 상하면 운반한 백성에게 배상하겠다는 ③ 부분이 수나라의 가혹한 수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당 고종 때 편찬된 『당률소의』 「구고율」 수관물 사닉교위(輸官物詐匿巧偽)조에 조세로 내거나 관에 바치는 물건이 젓거나 품질이 조악하면 그 손상된 물자는 도죄(盜罪)로 처벌함을 규정하였다.⁷³ 이 조항의 주의(奏議)에서 관청에 바쳐야 할 물자가 손상되면 도죄로 처벌하고 법에 따라 그 물자를 배상하여 채워 넣을 것을 명시하였다.⁷⁴ 원문 “제응수과세급입관지물(諸應輸課稅及入官之物)”의 ‘수(輸)’는 물자를 옮기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금 앞에 동사로 쓰이면 세금을 ‘납부’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輸’자가 전자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면 당나라 초기에 이미 운반한 상한 곡물을 물자를 운반한 백성들에게 배상시켰음을 법조문으로 명문화했음을 알 수 있다. ‘輸’자가 후자의 뜻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관청의 물자를 훼손한 혐의로 처벌과 동시에 배상시킬 수 있었다. 즉 이 조항을 근거로 물자 수송을 잘못된 백성들에게 책임과 손해배상을 전가할 수 있었다. 당대에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의종 때인 863년(咸通 4) 복주(福州)에서 광주(廣州)로 해운으로 곡물을 운반할 때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침몰하여 곡물이 없어지면 이를 강리(綱吏)나 주인(舟人)에게 배상시켰다.⁷⁵ 운반자에게 손상된 곡물을 배상하는 사

70 王仲榮, 『隋唐五代史』, 66쪽.

71 『夢溪筆談』(沈括, 鳳凰出版社, 2009) 卷11 「官政」 1114~1115쪽, “凡師行, 因糧於敵, 最為急務. 運糧不徒多費, 而勢難行遠. 余嘗計之, 人負米六斗, 卒自攜五日乾糧, 人餉一卒, 一去可十八日(米六斗, 人食日二升. 二人食之, 十八日盡.), 若計復回, 只可進九日. 二人餉一卒, 一去可二十六日(米一石二斗, 三人食, 日六升, 八日, 則一夫所負已盡, 給六日糧遣回. 後十八日, 二人食, 日四升並糧.), 若計復回, 止可進十三日(前八日, 日食六升. 後五日并回程, 日食四升並糧.); 三人餉一卒, 一去可三十一日(米一石八斗, 前六日半, 四人食, 日八升. 減一夫, 給四日糧. 十七日, 三人食, 日六升. 又減一夫, 給九日糧. 後十八日, 二人食, 日四升並糧.), 計復回, 止可進十六日(前六日半, 日食八升. 中七日, 日食六升. 後十一日并回程, 日食四升並糧.); 三人餉一卒, 極矣. 若興師十萬, 輜重三之一, 止得駐戰之卒七萬人, 已用三十萬人運糧, 此外難復加矣(放回運人, 須有援卒. 緣運行死亡疾病, 人數稍減, 且以所減之食, 準援卒所費.). 運糧之法, 人負六斗, 此以總數率之也. 其間隊長不負, 樵及減半, 所餘皆均在眾夫. 更有死亡疾病者, 所負之米, 又以均之, 則人所負, 常不啻六斗矣. 故軍中不容冗食, 一夫冗食, 二三人餉之, 尚或不足. 若以畜乘運之, 則駝負三石, 馬騾一石五斗, 驢一石. 比之人遠, 雖負多而費寡, 然芻牧不時, 畜多瘦死. 一畜死, 則并所負棄之. 較之人負, 利害相半”.

72 崔珍烈,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 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軍史』 124, 2022, 150~155쪽.

73 『唐律疏議』(劉俊文 撰, 『唐律疏議箋解』, 北京: 中華書局, 1996) 卷15 第217條 「廩庫律」 輸官物詐匿巧偽條疏議, 1145~1146쪽, “諸應輸課稅及入官之物, 而迴避詐匿不輸, 或巧爲濕惡者, 計所闕, 準盜論. 主司知情, 與同罪, 不知情, 減四等”.

74 『唐律疏議』 卷15 「廩庫律」 輸官物詐匿巧偽條疏議, 1146쪽, “議曰, 應輸課稅, 謂租·調·地稅之類及應入官之物, 而迴避詐匿, 假作逗留, 遂致廢闕及巧爲濕惡, 欺妄官司, 皆總計所闕入官物數, 準盜科罪, 依法陪填”.

75 『資治通鑑』 卷250 「唐紀」 66 懿宗咸通四年七月辛卯朔條, 8105쪽, “復置安南都護府於行交州, 以宋戎爲經略使, 發山東嶺山以東兵萬人鎮之. 時諸

레처럼 곡물의 양이 줄어들 때를 대비하여 당전기 정조(正租)와 지세(地稅)에 모두 가모(加耗)를 거두었다. 함가창명전(含嘉倉銘磚)에 따르면 정조의 모(耗)가 1/100이었다. 즉 1석에 1승(升)의 모를 징수하였다. 또 곡물을 비롯한 세물(稅物)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명목으로 각전(脚錢), 창고(倉窟), 이숙(裏束), 가모세(加耗稅)를 거두었다. 즉 정(丁)에게 부과한 조(租) 2석에 백성들에게 보관비(耗折), 창고비(倉窟費)를 추가로 징수했고 운반비를 징수하였다.⁷⁶ 북송시대 천성령(天聖令)에서 발견된 당령(唐令) 부역령 당4조에도 백성들이 조세를 낼 때 운송 비용을 자비 부담해야 하며 조세를 운반하는 선박이 있으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⁷⁷ 창고령 당1조에도 백성들이 창고에 세금으로 납부한 물자의 부피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여 기간에 따라 1승 또는 2승을 추가로 부담함을 규정하였고,⁷⁸ 창고령 당2조에서 곡물 등을 창고에 보관할 때 필요한 지푸라기, 말뚝, 대자리 등을 백성들이 부담함을 명시했으며,⁷⁹ 제14조에서 수도에 용조(庸調)를 보낼 때나 각 곳의 창고에 저장할 때 수레별로 거저(籐條) 4령(領), 승(繩) 200척(尺), 침(籤) 30경(莖)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였다.⁸⁰ 모, 가모 등 부가

세는 세금으로 거둔 곡물과 비단, 포(布), 기타 특산물의 양이 운반과 보관 도중 양이나 부피가 줄어드는 감소량을 백성들에게 강제로 부담시키는 규정이며, 운반 당사자들에게 상한 곡물을 배상하라는 조치와 본질상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당 초기의 법률 조항이 수나라의 법률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③ 구절이 양제의 폭정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당시 관리들이 법률대로 집행한 것에 불과했다. 『수서』에서 이를 굳이 기록한 것은 독자들에게 수양제와 관리들의 조치가 폭정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장치였다. ③ 구절에서 운반하기 전에 곡물의 부패가 발견되면 다행이지만, 운송 도중 또는 운송을 마친 후에 곡물이 상했을 경우 다시 고향으로 가서 자기 집에 저장된 곡물을 바쳐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이는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무기와 군량 수송에 동원되거나 관리들의 수탈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군도가 되었다는 ④ 구절이 주목된다. 백성들의 고통은 이 해에 발생한 자연재해 때문이었다. 611년(大業7) 가을에 홍수가 나서 산동·하남의 30여 군이 포몰되고 백성들은 서로 자신을 팔아 노비가 되었다.⁸¹ 시월을묘일(611.11.13)에 지주산(砥柱山)이 무너져 황하가 수십 리나 역류하였다.⁸² 이때의 피해 상황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수도 대흥성의 동쪽 지역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처럼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산동·하남의 30여 군⁸³에서 물자 수송을 위한 인력을 징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고통이 겹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봉기하였다. 양제의 제1차 고구려 침략 1년 전인 『수서』 「양제기」상 대업칠년십이월기미(612.1.16)조의 기사를 보자.

庫舊有仍堪充用者，不須科。若舊物少，則總計(進)少數，均出諸軍”。

81 『隋書』卷3 「煬帝紀」上 大業七年秋條，76쪽， “秋，大水，山東·河南漂沒三十餘郡，民相賣為奴婢”。

82 『隋書』卷3 「煬帝紀」上 大業七年十月乙卯條，76쪽， “冬十月乙卯，底柱山崩，偃河逆流數十里”。

83 胡三省은 이 30餘郡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資治通鑑』卷181 「隋紀」5 煬帝大業七年十二月條，5654쪽， “山東·河南大水，漂沒三十餘郡，冬十月乙卯，底柱崩，偃河逆流數十里”。

道兵援安南者屯聚嶺南，江西·湖南·江西·湖南餽運者皆沂湘江入灤渠·灤水。請造千斛大舟，自福建首府設福州運米泛海，不一月至廣州，從之，軍食以足。然有司以和雇為名，奪商人舟，委其貨於岸側，舟入海或遇風濤沒溺，有司囚繫綱吏·舟人，使償其米，人頗苦之”。

76 李錦綉，『唐代財政史稿』第二冊，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7，152~154쪽.

77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釘履課題組 校證，北京：中華書局，2006) 校錄本 賦役令卷第二十二 唐4條，269쪽， “諸租須運送，脚出有租家之(之家)。如欲自送及雇運水陸，並任情願，其有課船處，任以課船充”。

78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校錄本 倉庫令卷第二十三 唐1條，281쪽， “諸倉窖貯積者，粟支九年；米及雜種支五年。下溼處，粟支五年；米及雜種支三年。貯經三年以上，一斛聽耗一升；五年以上，二升。其下濕處，稻穀及粳米各聽加耗一倍，以外不得計年除耗”。

79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校錄本 倉庫令卷第二十三 唐2條，282쪽， “諸輸米粟二斛，課高(高+小)(橐)一圍；(圍長三尺。凡圍皆準此。)三斛，橐一枚。米二十斛，籐條一番；粟四十斛，若(苫)一番，長八尺，廣五尺大小。麥二斛，橐(橐)一圍；三斛，橐一枚；二十斛，籐條一番；七十斛，越(越)一斛。麥飯二十斛，籐條一番。並充倉窖所用，即令輸人營備。不得令官人親識判窖”。

80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校錄本 倉庫令卷第二十三 唐14條，285쪽， “諸送庸調向京及諸處貯庫者，車別科籐條四領，繩二百尺，籤三十莖。即在

이때 요동 전사와 궤운자(饋運者)가 길에 봄뻗으며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역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은 처음으로 군도가 되었다.⁸⁴

『자치통감』에 따르면 같은 달에 추평(鄒平)의 백성 왕박(王薄)이 장백산(長白山)을 근거지로 제주(齊州)와 제주(濟州) 일대를 약탈하였다.⁸⁵ 평원군(平原郡) 동쪽의 두자항(豆子航)에 도적떼가 모여들었는데 유패도(劉霸道)가 이들을 규합하여 10여 만을 거느렸으며 아구적(阿舅賊)이라 칭하였다.⁸⁶ 발해군(渤海郡) 수현(蓀縣) 사람 고사달(高士達)이 청하군(清河郡) 경내에서 도적질을 하였는데 장남현(漳南縣) 사람 두건덕(竇建德)이 고사달의 무리에 합류하였다. 장금칭(張金稱)이 손안조(孫安祖)를 죽이자 손안조의 부하들이 두건덕에게 귀부하여 두건덕의 무리가 1만여 명에 달했다.⁸⁷ 이 세 사례에서 황하 이북의 평원군과 청하군, 황하 이남의 제군(齊郡)과 제북군(濟北郡) 일대에서 도적떼가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자치통감』에서 「수기」 5 양제 대업칠년십이월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때부터 여러 지역에서 도적떼가 봉기하였는데 수를 셀

84 『隋書』卷3「煬帝紀」上 大業七年十二月己未條, 76쪽, “于時遼東戰士及饋運者填咽於道, 晝夜不絕, 苦役者始為羣盜”.

85 『資治通鑑』卷181「隋紀」5 煬帝大業七年十二月條, 5656쪽, “鄒平民王薄擁眾據長白山, 剽掠齊·濟之郊, 自稱知世郎, 言事可知矣; 又作《無向遼東浪死歌》以相感勸, 避征役者多往歸之”.

86 『資治通鑑』卷181「隋紀」5 煬帝大業七年十二月條, 5656쪽, “平原東有豆子航, 負海帶河, 地形深阻, 自高齊以來, 羣盜多匿其中. 有劉霸道者, 家於其旁, 累世仕宦, 貲產富厚, 霸道喜遊俠, 食客常數百人, 及羣盜起, 遠近多往依之, 有眾十餘萬, 號「阿舅賊」”.

87 『資治通鑑』卷181「隋紀」5 煬帝大業七年條, 5656~5657쪽, “漳南人竇建德, 漳南, 少尚氣俠, 膽力過人, 為鄉黨所歸附. 會募人征高麗, 建國以勇敢選為二百人長. 同縣孫安祖亦以驍勇選為征士, 安祖辭以家為水所漂, 妻子餓死, 縣令怒笞之. 安祖刺殺令, 亡抵建德, 建德匿之. 官司逐捕, 蹤跡至建德家, 建德謂安祖曰: ‘文皇帝時, 天下殷盛, 發百萬之家以伐高麗, 尚為所敗. 今水潦為災, 百姓困窮, 加之往歲西征, 行者不歸, 瘡痍未復; 主上不恤, 乃更發兵親擊高麗, 天下必大亂. 丈夫不死, 當立大功, 豈可但為亡虜邪? 乃集無賴少年, 得數百人, 使安祖將之, 入高雞泊中為羣盜, 安祖自號將軍. 時鄙人張金稱聚眾河曲, 稱人高士達聚眾於清河境內為盜. 郡縣疑建德與賊通, 悉收其家屬, 殺之. 建德帥麾下二百人亡歸士達, 士達自稱東海公, 以建德為司兵. 頃之, 孫安祖為張金稱所殺, 其眾盡歸建德, 兵至萬餘人. 建德能傾身接物, 與士卒均勞逸, 由是人爭附之, 為之致死”.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무리가 많은 집단은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성읍을 공격하였다. 갑자일(612.1.21)에 도위(都尉)와 응양(鷹揚)에게 군현과 함께 협력하여 이들을 추포하며 잡으면 참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도적의 봉기는 능히 그치게 할 수 없었다.⁸⁸

위의 인용문에서 각 지역에서 일어난 도적의 봉기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제는 도적의 봉기에 신경 쓰지 않고 위의 일이 발생한 다음 달인 대업 8년 정월 신사일(612.2.7)에 대군을 탁군에 집합시키고⁸⁹ 고구려 침략을 강행했지만, 도적이 창궐하는 지역에서 물자를 수송할 백성을 징발할 수 없었다. 이는 군량 수송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를 인식한 양제가 요동성을 방문하며 장수들을 질책하며 전투를 지휘하던 유월 기미일(612.7.14)⁹⁰ 전후부터 군량 수송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는 수나라 병사가 후퇴하는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

4. 612년 고수전쟁 당시 물자 수송의 실상

4.1. 수나라 병사들의 물자 휴대와 그 실상

612년 고수 전쟁 당시 백성들이 군수 물자 수송에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나라 병사도 직접 군량 일부를 가지고 행군하였다. 612년 수나라 병사들이 탁군을 출발할 때 보졸 4단(團), 기병 4단, 수항사자(受降使者), 치중(輜重)·용거(戎車)·산병(散兵) 4단의 순서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영에 도착한 후 4단의 기병이 동서남북 바깥에 진을 치고 방진(方陣)을 만들었으며 보졸은 치중을 도와 진 안에 들어 가서 안영(安營)에 머물렀다. 안영의 밖에 수레를 포진시

88 『資治通鑑』卷181「隋紀」5 煬帝大業七年十二月條, 5657~5658쪽, “自是所在羣盜蜂起, 不可勝數, 徒眾多者至萬餘人, 攻陷城邑, 甲子, 敕都尉·鷹揚與郡縣相知追捕, 隨獲斬決; 然莫能禁止”.

89 『隋書』卷4「煬帝紀」下 大業八年正月辛巳條, 79쪽.

90 『隋書』卷4「煬帝紀」下 大業八年六月己未條, 82쪽.

키고 그 안에 차례로 마창(馬槍), 병막(兵幕), 잡축(雜畜)을 두었다. 마대(馬隊)·보대(步隊)·치중이 2조로 나누어 5일마다 교대로 지켰다.⁹¹ 당시 수나라 군대가 기병, 보병, 치중·용거를 호위하는 산병(散兵)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군량과 무기, 이동식 텐트 등을 실은 치중 부대가 수나라 군대의 후방에서 함께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치중에 수나라 병사들이 먹을 식량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수나라 군대가 요수를 건널 때 부교를 설치할 때 아울러 용도를 만들었다. 용도는 명대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 치소의 서쪽 요하에 위치하였다. 용도(甬道)는 식량 수송을 보호하기 위해 길 양쪽에 쌓은 벽을 갖춘 수송로였다. 이적이 645년 고구려를 공격할 때 일부 당나라 군대가 회원진(懷遠鎮)에서 용도를 따라 고구려군의 감시망을 피해 요수를 건너 현도성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⁹² 용도의 존재에서 수나라의 영토에서 고구려 안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문술 등 장수들이 노하·회원 2진에서 고구려까지 사람과 말이 100일의 식량과 무기를 가지고 가도록 명령하였다. 사람에게 따로 3석 이상 싣고 가도록 명령하였고 미속(米粟)을 버리는 사졸을 참한다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군사들이 땅에 식량을 파묻고 행군하는 바

람에 도중에 식량이 바닥났다.⁹³ 우문술은 왜 군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먼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쉼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직접 군량을 짚어지고 행군하도록 명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내지에서 노하·회원 2진까지, 또는 노하·회원 2진에서 수나라 군대를 따라 고구려 영토 안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운송 인력의 수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3장의 인용문 ②, 즉 탁군 또는 황하 유역의 내지에서 노하·회원 2진까지 군량을 수송하던 수레와 소가 돌아오지 못했고 민부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는 대목⁹⁴에 주목하자. 수레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표현은 운반 도중 수레가 파손되었다는 뜻이며 소가 돌아오지 못했음은 소가 병에 걸렸거나 운반 때문에 쇠약해서 죽었음을 의미한다. 또 녹차부 60여만 명이 목적지까지 식량을 수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처벌을 두려워하여 달아났다.⁹⁵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고구려로 진격하는 수나라 군대를 위해 군량을 운반해야 했던 수나라 병사의 배인 2,267,600명이 처음에 출발한 인원이었지만 군량을 저장한 노하·회원 2진까지 이동하는 도중 사망하거나 도망가서 실제로 도착한 인력이 적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문술이 군량을 운반할 쉼자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군사들에게 식량을 운송하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군하는 병사들이 식량을 운반할 도구가 있었음에 주목하자. 바로 팔타(八駄) 또는 육타(六駄)로 표기되는 나귀 등 가축이다. 『수서』 「식화지」에서 수양제의 3차 고구려 침략 때 무마를 약탈당하여 말의 수가 부족하여 규정대로 팔타를 채울 수 없어 육타로 바꾸었고 그나마 절반을 나귀(驢)로 충당했다고 기록하였다.⁹⁶ 이는 612년

91 『隋書』卷8「禮儀志」3 親征條, 161쪽, “軍將發, 候大角一通, 步卒第一團出營東門, 東向陣. 第二團出營南門, 南向陣. 第三團出營西門, 西向陣. 第四團出營北門, 北向陣. 陣四面圍營, 然後諸團嚴竝立. 大角三通, 則鑼鼓俱振, 騎第一團引行. 隊間相去各十五步. 次第二團, 次前部鼓吹, 次弓矢一隊, 合二百騎. 建蹲獸旗, 爬槊二張, 大將在其下. 次誕馬二十四, 次大角, 次後部鼓吹, 次第三團, 次第四團, 次受降使者. 次及輜重戎車散兵等, 亦有四團. 第一輜重出, 收東面陣, 分為兩道, 夾以行. 第二輜重出, 收南面陣, 夾以行. 第三輜重出, 收西面陣, 夾以行. 第四輜重出, 收北面陣, 夾以行. 亞將領五百騎, 建騰豹旗, 殿軍後. 至營, 則第一團騎陣於東面, 第二團騎陣於南面, 鼓吹吹大將居中, 駐馬南向. 第三團騎陣於西面, 第四團騎陣於北面, 合為方陣. 四團外向, 步卒翊輜重入於陣內, 以次安營. 營定, 四面陣者, 引騎入營. 亞將率驍騎遊奕督察. 其安營之制, 以車外布, 間設馬槍, 次施兵幕, 內安雜畜. 事畢, 大將·亞將等, 各就牙帳. 其馬步隊與軍中散兵, 交為兩番, 五日而代”.

92 『讀史方輿紀要』卷37「山東」8 遼東都指揮使司·自在州·甬道條, 1708쪽, “在司西遼河上. 隋大業八年伐高麗, 起浮橋渡遼水, 因築甬道於河旁. 唐貞觀十八年, 伐高麗, 李世勣軍發柳城, 多張形勢, 若出懷遠鎮者, 而潛師北趨甬道, 出高麗不意, 度遼水至玄菟, 即隋所築甬道也”.

93 『資治通鑑』卷181「隋紀」5 煬帝大業八年條, 5663쪽, “述等兵自瀟河·懷遠二鎮, 人馬皆給百日糧, 又給排甲·槍礮并衣資·戎具·火幕, 人別三石已上, 重莫能勝致. 下令軍中: ‘士卒有遺粟米粟者斬!’ 軍士皆於幕下掘坑埋之, 纔行及中路, 糧已將盡”.

94 『資治通鑑』卷181「隋紀」5 煬帝大業七年十二月己未條, 5655쪽.

95 『資治通鑑』卷181「隋紀」5 煬帝大業七年十二月己未條, 5655쪽.

96 『隋書』卷24「食貨志」, 687~688쪽, “舉天下之人十分, 九為盜賊, 皆盜武馬, 始作長槍, 攻陷城邑. 帝又命郡縣置督捕以討賊. 益遣募人征遼, 馬少不充八駄, 而許為六駄. 又不足, 聽半以驢充. 在路逃者相繼, 執獲皆斬之, 而

전쟁 때 팔타로 충당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육타와 팔타는 병사 10인의 조직인 1화(火)라는 전투조직에서 구비해야 하는 타마를 가리킨다. 즉 육타는 6마리의 타마, 팔타는 8마리의 타마이다. 『신당서』 「병지」에 따르면 당대 절충부 위사가 1인이 활 1개, 화살 30대, 화살통, 횡도(橫刀), 칼 가는 솥돌, 빨송곳, 가죽 모자, 전장(氈裝), 행동(行滕, 정강이와 무릎을 매는 물건) 각각 1개씩, 맥반(麥飯) 9말(斗), 미(米) 2말, 개주(介冑)와 용구(戎具)를 자비로 마련해야 했다. 이 가운데 개주와 용구는 평소에 창고에 보관했다가 전쟁에 종군하면 장부와 대조한 후 지급받았다.⁹⁷ 군사 개인이 휴대해야 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자야 할 텐트와 막사, 취사도구 등도 행군 도중 운반해야 할 장비였다. 1화가 갖춘 타마 8마리에 10명의 병사들이 휴대한 짐을 실었을 것이다. 수나라의 응양부 병사도 당나라 절충부 위사와 같은 규정을 따랐다면 고구려 원정군도 10인당 8마리의 타마에 짐을 실은 후에 함께 행군했을 것이다. 따라서 백일 치의 식량 또는 3석 이상의 곡물 중 일부를 타마에 실어 나를 수 있었다. 우문술은 이러한 운송수단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백일분의 식량을 병사들에게 휴대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팔타’의 존재를 모르면 우문술 등 장수들의 명령이 무모한 지시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체는 아니었다. 다만 수나라가 고구려 영토 안까지 군량을 제대로 수송하지 못한 사실을 폭로했음을 자인한 명령이었다.

4.2. 군량 수송의 실패와 그 결과

수나라 병사의 행군과 고구려 침략 일자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월 계미일(2.9) 수나라 병사의 제일군(第一軍)이 탁군을

莫能止。帝不憚。遇高麗執送叛臣斛斯政，遣使求降，發詔赦之”。

97 『新唐書』卷50「兵志」府兵之制條，1325쪽，“十人爲火，火有長。火備六馱馬。凡火具烏布幕·鐵馬盂·布槽·鋤·鑿·碓·筐·斧·鉗·鋸皆一，甲牀二，鎌二，隊具火鑽一，胸馬繩一，首羈·足絆皆三。人具弓一，矢三十，胡祿·橫刀·礪石·大觶·氈帽·氈裝·行滕皆一，麥飯九斗，米二斗，皆自備，并其介冑·戎具藏於庫。有所征行，則視其入而出給之”。

출발.⁹⁸

삼월 계사일(4.19) 양제가 군사 지휘.

삼월 갑오일(4.20) 요수교(遼水橋)에서 고구려군과 대치.

삼월 무술일(4.24) 고구려군에게 막혀 요수를 건너지 못함.

사월 갑자일(5.20)⁹⁹ 양제가 요수를 건넌. 요수 동안(東岸)에서 큰 전투 벌어짐.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요동성 포위.¹⁰⁰

유월 기미일(7.14) 양제가 요동성을 방문하며 장수들을 질책. 성 서쪽 수리 떨어진 육합성(六合城)에 도착.¹⁰¹

칠월 임인일(8.26) 우문술 등이 살수에서 패배. 2천여 기만 도망. 계묘일(8.27) 회군.¹⁰²

『당육전』의 기록에 따르면 말은 하루에 70리, 도보와 나귀를 타고 가면 50리, 수레는 30리이다.¹⁰³ 당나라 유주, 즉 수나라의 탁군부터 요하(요수)까지의 거리 1,690리를 보행이나 나귀를 이용하면 약 34일, 수레를 이용하면 약 57일 걸린다.¹⁰⁴ 수나라의 제일군이 정월 계미일(2.9)에 탁군을 출발하여 삼월 갑오일(4.20) 요수에서 도착하여 고구려군과 대치하였다. 이때까지 72일 걸렸다. 이는 수레를 이끌고 하루에 30리 가는 같은 구간의 소요 기간 57일보다 15일 느렸으며, 하루에 23.4리씩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¹⁰⁵ 병사들이 무기 등 장비뿐만 아니라 식량을 직접 운

98 『隋書』卷4「煬帝紀」下大業八年正月壬午條，81~82쪽，“癸未，第一軍發，終四十日，引師乃盡，旌旗亘千里”。

99 원문은 ‘甲午’인데 앞의 ‘甲午’와 중복된다. 校勘記에서 ‘甲午’는 ‘甲子’의 誤記이며 四月이라고 보았다(『隋書』卷4「煬帝紀」下 校勘記5, 97쪽). 본문에서 校勘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100 『隋書』卷4「煬帝紀」下大業八年三月條，82쪽，“三月辛卯，兵部尚書·左候衛大將軍段文振卒。癸巳，上御師。甲午，臨戎于遼水橋。戊戌，大軍爲賊所拒，不果濟。右屯衛大將軍·左光祿大夫麥鐵杖，武貞郎將錢士雄·孟金叉等，皆死之。甲午，車駕渡遼。大戰于東岸，擊賊破之，進圍遼東”。

101 『隋書』卷4「煬帝紀」下大業八年六月己未條，82쪽，“六月己未，幸遼東，責怒諸將。止城西數里，御六合城”。

102 『隋書』卷4「煬帝紀」下大業八年七月壬寅條，82~83쪽，“七月壬寅，宇文述等敗績于薩水，右屯衛將軍辛世雄死之。九軍並陷，將帥奔還亡者二千餘騎。癸卯，班師”。

103 『唐六典』卷3 尚書戶部·度支郎中條，80쪽，“凡陸行之程，馬日七十里，步及驢五十里，車三十里”。

104 최진열, 앞의 논문(2022), 153~154쪽.

105 隋代 1尺은 29.5cm, 唐代 大尺은 31.1cm, 小尺은 24.6cm이므로 미터법으로 환산한 길기의 도량형 차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양자의 차

받았기 때문에 행군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당나라 유성군(영주), 즉 수나라 요서군¹⁰⁶에서 요하(요수)까지 거리가 480리인데,¹⁰⁷ 걸어가면 10일(9.6일에서 반올림), 수레로 움직이면 16일이 걸렸다. 노하·회원 2진이 수나라 요서군 치소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도달 시간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문술의 명령대로 군사들이 100일분 군량을 가지고 행군했다면 90일 또는 84일 분량의 식량이 아직 남아 있었다. 수나라 군대는 삼월 갑오일(4.20)에 요수에 도착하여 고구려군과 대치한 후에 사월 갑자일(5.20)에 요수를 건너 요동성으로 진격할 때까지 31일 걸렸다. 이때까지도 100일분 식량을 휴대했다면 수나라 병사들은 별도의 보급 없이 버틸 수 있었다. 요동성 포위전에 지속되자 양제가 유월 기미 일(7.14) 요동성을 방문하며 장수들을 질책하였다.¹⁰⁸ 이때가 요동성을 포위한지 56일이 지났을 시점이며, 백일 치 식량을 가지고 갔다면 군량이 부족할 때였다. 이때에 양제의 질책을 받은 우문술·우중문(于仲文)·원항(元恒)·설세웅(薛世雄)·신세웅(辛世雄)·장근(張瑾)·조효재(趙孝才)·최홍승(崔弘昇)·위문승(衛文昇) 등이 각각 군대를 이끌고 압록수(鴨綠水) 서쪽까지 진격하여 모이기로 하였다.¹⁰⁹ 이후 우문술 등이 칠월 임인일(8.26) 살수에서 패배하고 2천여 기만 도망갔다.¹¹⁰

이상으로 수나라 군대의 동선을 살펴보았는데 우문술 등이 지휘하는 수나라 군대의 군량 문제에 의문점이 남아 있다. 『자치통감』 양제대업팔년유월조에서 우문술·우중

이를 무시하고 唐代 도량형으로 표기한다.

¹⁰⁶ 『隋書』卷30「地理志」中 冀州·遼西郡細注條, 859쪽, “舊置營州, 開皇初置總管府, 大業初府廢”.

¹⁰⁷ 『通典』권178「州郡」8柳城郡條細注, 4715쪽, “東至遼河四百八十里”.

¹⁰⁸ 『隋書』卷4「煬帝紀」下大業八年六月己未條, 82쪽.

¹⁰⁹ 『資治通鑑』卷181「隋紀」5煬帝大業八年六月條, 5663~5664쪽, “左翊衛大將軍宇文述出扶餘道, 右翊衛大將軍于仲文出樂浪道, 左驍衛大將軍荊元恒出遼東道, 右翊衛將軍薛世雄出沃沮道, 左屯衛將軍辛世雄出玄菟道, 右禦衛將軍張瑾出襄平道, 右武侯將軍趙孝才出碣石道, 涿郡太守檢校左武衛將軍崔弘昇出遼城道, 檢校右禦衛虎賁郎將衛文昇出增地道, 皆會於鴨綠水西”.

¹¹⁰ 『隋書』卷4「煬帝紀」下大業八年七月壬寅條, 82~83쪽.

문·원항·설세웅·신세웅·장근·조효재·최홍승·위문승 등이 각각 군대를 이끌고 압록수 서쪽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다고 기록하였다.¹¹¹ 다음 구절에 우문술의 명령을 100일분 군량을 받은 군사들이 군량을 파묻어서 행군 중에 군량이 모두 없어졌다고 기록하였다.¹¹² 이는 요동성에서 압록수로 진격하는 사이에 군사들이 군량을 버렸다는 인상을 준다. 사료의 “중로(中路)”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행군 도중 군량을 파묻었다고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결국 군량 운반의 실패도 별동부대의 패배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요동성을 공격하는 수나라 본진도 마찬가지였다. 수양제가 친히 요동성 공격을 지휘했을 무렵부터 군중에 남아 있던 식량이 모두 소진되었고 전수(轉輸)가 이어지지 못하여 군량이 부족하여 수나라 군대 대부분 패배하여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는 『수서』 「동이·고려전」의 기사¹¹³를 보면 군량 수송행렬을 보호하는 용도가 존재했음에도 군량 수송이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좌후위 대장군(左候衛大將軍) 단문진(段文振)이 전쟁 초기에 병량(兵糧)이 고갈되었음을 지적한 상표(上表)¹¹⁴에서도 예정되었던 일이었다. 양제는 연군(燕郡)의 행정을 대리하던 유

¹¹¹ 『資治通鑑』卷181「隋紀」5煬帝大業八年六月條, 5663~5664쪽.

¹¹² 『資治通鑑』卷181「隋紀」5煬帝大業八年六月條, 5664쪽, “述等兵自瀟河·懷遠二鎮, 人馬皆給百日糧, 又給排甲·槍稍稍, 并衣資·戎具·火幕, 人別三石已上, 重莫能勝致. 下令軍中: ‘士卒有遺棄米粟者斬!’ 軍士皆於幕下掘坑埋之, 纔行及中路, 糧已將盡”.

¹¹³ 『隋書』卷81「東夷·高麗傳」, 1817쪽, “大業七年, 帝將討元之罪, 車駕渡遼水, 上營於遼東城, 分道出師, 各頓兵於其城下. 高麗率兵出拒, 戰多不利, 於是皆嬰城固守. 帝令諸軍攻之, 又勅諸將: ‘高麗若降者, 即宜撫納, 不得縱兵.’ 城將陷, 賊輒言請降, 諸將奉旨不敢赴機, 先令馳奏. 比報至, 賊守禦亦備, 隨出拒戰. 如此者再三, 帝不悟. 由是食盡師老, 轉輸不繼, 諸軍多敗績, 於是班師”.

¹¹⁴ 『隋書』卷60「段文振傳」, 1459~1460쪽, “及遼東之役, 授左候衛大將軍, 出南蘇道. 在道疾篤, 上表曰: ‘臣以庸微, 幸逢聖世, 濫蒙獎擢, 榮膺僉伍. 而智能無取, 叨竊已多, 言念國恩, 用忘寢食. 常思効其鳴吠, 以報萬分, 而攝養乖方, 疾患遂篤. 抱此深愧, 永歸泉壤, 不勝餘恨, 輕陳管穴. 竊見遼東小醜, 未服嚴刑, 遠降六師, 親勞萬乘. 但夷狄多詐, 深須防疑, 口陳降款, 心懷背叛, 詭伏多端, 勿得便受. 水潦方降, 不可淹遲, 唯願嚴勅諸軍, 星馳速發, 水陸俱前, 出其不意, 則平壤孤城, 勢可拔也. 若傾其本根, 餘城自剋, 如不時定, 脫遇秋霖, 深為艱阻, 兵糧又竭, 強敵在前, 鞅鞅出後, 遲疑不決, 非上策也.’ 後數日, 卒於師”.

건(柳壽)을 보급 실패를 이유로 영남에 유배 보냈다.¹¹⁵ 이는 당시 물자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양제는 유건에게 책임을 지워 처벌한 것이다. 우문술 등 9군의 30여만 명이 전멸했어도 아직 80여 만 명의 수나라 병사들이 요동성 등 고구려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군한 이유는 결국 군량 수송의 실패 때문이었다.

5. 결론

양제는 607년 돌궐 계민가한의 거처에서 고구려 사자를 발견하고 고구려 침략을 결정했다. 다음 해인 608년 전쟁 물자 수송을 위해 영제거를 뚫었고 610년에 전마를 구매하였으며 무기를 점검하고 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훈련시켰다. 또 군수물자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612년 전쟁 당시 영주에서 고구려와의 국경선까지 이어지는 용도까지 만들었다.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계획이 완벽했다. 현존하는 사료를 검토하면 장강 장상류인 양주와 형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병사들을 징발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수나라는 군수물자 수송에 실패하였다.

제1차 고구려 원정 당시 양제는 정규병의 배나 되는 2,267,600인의 궤운자, 즉 군수품 운반 인력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수나라 군대를 지휘한 우문술 등 장수들이 군량이 저장된 국경지대인 노하·회원 2진에서 고구려의 영토 안으로 침입할 때 병사들에게 100일 분량의 군량을 휴대하고 진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기사를 보면 궤운자의 군량 수송이 주로 수나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졌고 몇 년 동안 준비한 병참 문제가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隋書』, 魏徵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3.
 『舊唐書』, 劉昫等修, 北京: 中華書局, 1975.
 『新唐書』, 歐陽修·宋祁撰, 北京: 中華書局, 1975.
 『資治通鑑』, 司馬光編著, 胡三省音注, 北京: 中華書局, 1956.
 『唐律疏議』, 劉俊文撰, 『唐律疏議箋解』, 北京: 中華書局, 1996.
 『唐六典』, 李林甫等撰, 陳仲夫點校, 北京: 中華書局, 1992(2005重印).
 『通典』, 杜佑撰, 王文錦等點校, 中華書局, 1988.
 『全唐文』, 董誥等編, 北京: 中華書局, 1983.
 『夢溪筆談』, 沈括, 鳳凰出版社, 2009.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釘履課題組校證, 北京: 中華書局, 2006.
 『讀史方輿紀要』, 顧祖禹撰, 賀次君·施和金點校, 中華書局, 2005.

2. 단행본 및 논문

이정빈,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 연구」,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7.
 임기환,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논총』 8, 신구문화사, 2014.
 정동민,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軍史』 102, 2017.
 정동민, 「고구려와 수 전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8.
 최진열, 「唐太宗高句麗親征과 唐軍의 병력: 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軍史』 124, 2022.
 _____, 「唐太宗 시기 高唐 전쟁과 선박제조: 제조 인력과 건조 비용의 재정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軍史』 127, 2023.
 _____, 「645년 高唐 전쟁과 唐兵의 편제」, 『軍史』 132, 2024.
 _____,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東洋史學研究』 167, 2024.
 姜維東, 「唐朝東征高句麗時的糧運措施」, 『長春師範學院學報』 21-3, 2002.
 姜浩, 「隋唐造船業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4.
 郭聲波, 「歷代黃河流域鐵冶點的地理布局及其緣邊」,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4-3, 1984.
 董咸明, 「唐代的自然生產力與經濟中心南移-試論森林對唐代農業·手工業生產的影響-」, 『雲南社會科學』 1985-12, 1985.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拜根興, 「墓誌所見隋煬帝親征高句麗」,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8-1, 2019.
 史念海, 「黃河中流森林的變遷及其經驗教訓」, 『河山集』 3, 北京: 人民出版社, 1988.
 席龍飛, 『中國造船史』, 湖北教育出版社, 2000.
 吳家洲, 「唐代洛陽地區森林變遷研究」, 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8.6.
 吳家洲, 「唐代洛陽地區新營建宮殿建築與森林變遷」,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8.
 吳家洲, 「唐代山東地區手工業發展與森林變遷」, 『山東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7-4(總第75期), 2017.
 吳汝峰, 「唐代河北道手工業發展對森林的破壞」, 『滄州師範學院學報』 37-3, 2021.
 王仲榮, 『隋唐五代史』, 北京: 中華書局, 2007.
 李錦綉, 『唐代財政史稿』 第二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張鑑模, 「從中國古代鑛業看金屬礦產的分布-兼論“歷史報鑛”」, 『科學通報』 1955-9, 1955.
 張文才, 『隋代軍事史』(中國軍事通史第九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張曉東, 『漢唐漕運與軍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10.
 曹柳麗, 「隋煬帝·唐太宗征高句麗軍事後勤建設比較研究」,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淺見直一郎, 「煬帝の第一次高句麗遠征軍: その規模と兵種」, 『東洋史研究』 44-1, 1985.

115 『隋書』 卷47 「柳機傳附從子壽之傳」, 1276卒, “帝幸遼東, 召壽之檢校燕郡事. 及帝班師, 至燕郡, 坐供頓不給, 配戍嶺南, 卒於涇口, 時年六十”.

韓昇, 「南方復起與隋文帝江南政策的轉變」, 廈門: 『廈門大學學報: 哲社版』 1998-2, 1998.

Abstract

The Recruitment of Soldiers and Transportation of Military Supplies of the Goguryo-Sui War in 612

Choi, Jin-Yeoul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recruitment of soldiers and transportation of military supplies in the Sui Dynasty during the Goguryeo-Sui War in 612.

Emperor Yangdi, the second emperor of Sui Dynasty, discovered the Goguryeo envoys at the Qimin's Ordu, residence of Turk Qaghan in 607 and decided to invade Goguryeo. He dug up Yongjiqu (永濟渠), northern waterway of the Grand Canal, to transport war supplies in 608, purchased war horses, inspected and made new weapons, and give military training to the subject in 610. In order to safely transport military supplies, Yongdao (甬道), a food transport route with walls built on both sides of the road was created extending from Yongzhou to the border with Goguryeo during the War of 612. The plan for transporting military supplies to invade Goguryeo was perfect. As a result of my review of existing historical records, I confirmed that soldiers were conscripted from most areas except Liangzhou and Jingzhou, the upper reaches of the Yangtze River. However, although people from as far away as the Yangtze River Valley in the south were mobilized to transport materials, the transport of materials ultimately failed. During the Goguryeo-Sui War in 612, warmonger emperor mobilized 2,267,600 mobilized peasant people carrying military supplies, which was twice the number of regular soldiers. However, when the generals, including Yuwen Shu (宇文述), who commanded the Sui Dynasty army, invaded Goguryeo's territory from Luhezhen (瀘河鎮) and Huaiyuanzhen (懷遠鎮), the border area where military supplies were stored, they provided the soldiers with enough food for 100 days. Each person was ordered to carry and march. Looking at this record, we can see that the transportation of military supplies for the mobilized peasant people was mainly carried ou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ui Dynasty, and that there were many problems with the logistics that had been prepared for several years.

Keywords Goguryeo, Goguryeo-Sui War in 612, Emperor Yangdi, the recruitment of soldiers, transportation of military supplies